

서면답변서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위원	김진석 위원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산림과장)	답변일자	2007.11.30
회 의	제14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행정사무감사활동(제2일차)		

질문요지

- 산림과 수의계약 관련 근거규정 및 대상사업 현황

답변내용

- 근거규정 1부 및 대상사업 현황 1부.(별첨)

■ 수익계약 관계법령

관계법령	내용
<p>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(계약의 방법)</p> <p>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(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</p>	<p>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익계약(隨意契約)에 의할 수 있다.</p> <p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다.</p> <p>8. 그 밖에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</p> <p>아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</p>
<p>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(산림사업의 대행 등)</p>	<p>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</p>
<p>○ 산림조합법 제46(사업)</p>	<p>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.</p> <p>3. 산림경영사업</p> <p>가. 산림의 대리경영</p> <p>나.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·육림·벌채·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</p> <p>다. 임도의 시설 및 보수·사방·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그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</p> <p>라. 휴양림·산림욕장·임간수련장·산림박물관·수목원·생태숲·도시숲·학교숲·등산로·수렵장의 조성 및 그 시설의 설치·관리</p> <p>마. 산촌종합개발사업</p> <p>바. 산림사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 사업</p>

대상사업 현황

산림경영사업

가. 산림의 대리경영

나.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·육림·벌채·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

다. 임도의 시설 및 보수·사방·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그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

라. 휴양림·산림욕장·임간수련장·산림박물관·수목원·생태숲·도시숲·학교숲·등산로·수렵장의 조성 및 그 시설의 설치·관리

마. 산촌종합개발사업

바. 산림사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 사업